

## 2017년도(17년 7월 ~ 18년 6월) 일본세관 기업심사결과 세액 추징 현황

-추징세액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85류 전기기기-

일본 재무성은 2018년 11월 14일 2017사무년도 (17년 7월 ~ 18년 6월)에 전국세관에서 실시한 기업심사 결과 추징한 관세 및 내국소비세 현황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총괄

총 4,266개 수입업체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하였으며, 기업심사결과 신고누락 등으로 세액이 추징된 수입업체는 총 3,365개 업체였다.

신고누락 등과 관련된 과세가격은 약 1,483억 7천만¥이며, 관세 등 추징세액은 약 141억 5천만¥, 추징세액 중 증가산 세액<sup>1)</sup>은 약 7천만¥이었다.

추징세액이 많았던 품목은 1) 전기기기(85류), 2) 광학기기 등(90류), 3) 자동차 등(87류), 4) 의료용품(30류), 5) 기계류(84류)이며, 상기품목이 전체 추징세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한 신고누락 사례로는 1)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정한 Invoice를 작성해서 저가 수입신고 하려고 한 경우, 2) Invoice에 기재된 결제금액의 화물대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3)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비용을 신고 누락한 경우 등이다.

(표1) 기업심사 현황

| 구분                        | 2017 사무년도      |             | 2016 사무년도 <sup>2)</sup> |              |
|---------------------------|----------------|-------------|-------------------------|--------------|
|                           |                | 전년 대비       |                         |              |
| 기업심사 대상 수입업체 <sup>①</sup> | 4,266개 업체      | 98.6%       | 4,325개 업체               |              |
| 신고누락 수입업체 <sup>②</sup>    | 3,365개 업체      | 101.8%      | 3,307개 업체               |              |
| 신고누락 비율(②/①)              | 78.9%          | 2.4p 증가     | 76.5%                   |              |
| 신고누락 과세가격                 | 1,483억 7,430만¥ | 105.5%      | 1,405억 9,320만¥          |              |
| 추징세액                      | 관세             | 20억3,256만¥  | 21.9%                   | 92억 9,633만¥  |
|                           | 내국소비세          | 121억2,064만¥ | 107.4%                  | 112억 8,044만¥ |
|                           | 계              | 141억5,320만¥ | 68.8%                   | 205억 7,677만¥ |
|                           | 가산세            | 6억354만¥     | 27.3%                   | 22억 1,328만¥  |
|                           | 증가산세           | 7,139만¥     | 4.1%                    | 17억 6,045만¥  |

1) 증가산세는 은폐 또는 가장하여 납세신고 하지 않고 또는 잘못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대세(무신고의 경우 40%, 과소신고의 경우 35%)이다. 무신고가산세(15%)와 과소신고가산세(10%)보다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2) 2016년 7월 ~ 2017년 6월까지를 의미한다.

(표2) 추정세액이 많은 상위 5개 품목

| 구분<br>순위 | 2017 사무년도 |        |             | 2016 사무년도 |        |             |
|----------|-----------|--------|-------------|-----------|--------|-------------|
|          | 분류        | 품목     | 추징세액        | 분류        | 품목     | 추징세액        |
| 1        | 85류       | 전기기기   | 24억 9,397만¥ | 02류       | 육류     | 49억 9,513만¥ |
| 2        | 90류       | 광학기기 등 | 21억 9,995만¥ | 85류       | 전기기기   | 25억 8,020만¥ |
| 3        | 87류       | 자동차 등  | 13억 2,173만¥ | 64류       | 신발류    | 16억 6,387만¥ |
| 4        | 30류       | 의료용품   | 10억 899만¥   | 90류       | 광학기기 등 | 13억 9,148만¥ |
| 5        | 84류       | 기계류    | 9억 5,847만¥  | 84류       | 기계류    | 11억 7,510만¥ |

## 2. 주요한 추정사례

1) 사례 1: 수입자가 지급한 가격조정금(Invoice 금액 이외의 화물대금) 신고누락  
수입자 A는 독일 수출자로부터 자동차 등을 수입하고 있다. A는 수출자와의 약정에 근거, 과거 수입한 화물에 대하여 소급해서 가격을 수정한 후 증액된 금액을 가격조정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본래 가격조정금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A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고 누락된 과세가격이 103억 7,105만¥이고, 추정세액은 8억 3,166만¥이었다.

2) 사례 2: 수입자가 무상 제공한 재료 등 비용 신고누락

수입자 B는 대만 수출자로부터 의료용품을 수입하고 있다. B는 수출자에게 수입화물 생산에 필요한 재료 및 수입화물 제조에 사용되는 설비를 일본 최종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고 있다. 본래 재료비 등의 무상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E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신고 누락된 과세가격이 23억 2,596만¥이고, 추정세액은 1억 8,869만¥이었다.

3) 사례 3: 결제금액과 다른 가격이 기재된 Invoice를 사용한 신고누락

수입자 C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가죽가방을 수입하고 있다. C의 경리담당자는 프랑스 판매처로부터 송부되어 온 결제용 Invoice에 근거하여 화물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C의 수입담당자는 수출자가 작성한 결제금액과 다른 가격이 기재된 Invoice를 사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었다. 본래 결제용 Invoice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경리담당자와 신고담당자 연락 부족으로 인해 F는 잘못된 Invoice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신고 누락된 과세가격이 7억 1,992만¥이고, 추정세액은 2,497만¥이었다.

4) 사례 4: EPA 특혜세율 적용 착오

수입자 D는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건조야채를 수입하고 있었다. D는 아세안 원료품으로서 일·아세안 EPA에 근거한 관세율(EPA 특혜세율)을 적용해서 신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조야채는 생산에 사용된 야채가 중국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어서, 아세안 원산지제품으로서 자격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P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WTO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그 결과 과세가격 14억 5,874만¥에 대하여 9%의 관세가 부과되는바 추정세액은 1억 5,032만¥이었다.

5) 사례 5: 스스로 작성한 저가 Invoice에 의한 수입신고

수입자 E는 영국 수출자로부터 가죽가방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정규 가격보다 저가의 Invoice를 작성하여 그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계산·신고함으로써 신고 누락된 과세가격이 4,167만¥이고, 추정세액은 1,040만¥(그중 증가산세는 258만¥)이었다.

6) 사례 6: 수출자에게 작성시킨 저가 Invoice에 의한 수입신고

수입자 F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F는 수입신고 전부터 정규 가격을 알고 있었는데, 수출자와 공모하여 수출자에게 정규 가격보다 저가로 Invoice를 작성하게 하는 등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한 후 낮은 가격이 기재된 Invoice에 근거하여 신고했다.

그 결과 신고 누락된 과세가격이 2,140만¥이고, 추정세액은 341만¥(그중 가산세는 86만¥)이었다.

7) 사례 7: 저가인 것을 알면서도 시정 않고 수입신고

수입자 G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G는 수입신고 전부터 정규 가격을 알고 있었는데, 수출자로부터 송부된 Invoice 기재가격이 정규 가격보다 저가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고, 탈루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한 후 낮은 가격이 기재된 Invoice에 근거하여 신고했다.

그 결과 신고 누락된 과세가격이 1,360만¥이고, 추정세액은 315만¥(그중 가산세는 76만¥)이었다.